위임전결 규정

제정 2020. 03. 25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무국장 및 팀장에게 위임, 전결 처리하게 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전결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전결사항) ① 회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의 결재를 사무국장 및 팀장에게 위임하여 별표1의 전결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.

-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별표1에 준하는 사항은 각 전결권자가 전결한다.
- ③ 결재권자의 출장 등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는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- ④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무 대행자가 대결하여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전항의 문서처리 후 결재권자의 후결 시 그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 (전결사항의 특례) ①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- 1.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
- 2.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
- 3.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-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 (보고)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책임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.

제7조 (전결권한 표시) 본 규정의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.

제2장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시행 2020년 3 월 25일>

위임전결 사항

업무내용		전결	전결권자	
		팀 장	국 장	회장
1.사업계획 수립	기본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			o
	단위사업의 시행		0	
2.규약, 규정의 제정 및 개정				О
3.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				0
4.재산취득 및 처분	재산의 취득 및 처분			0
	사무국운영에 따른 일반자산		О	
5.이사회	안건 상정			0
	의결사항 처리		O	
6.위원회	위원의 위촉 및 해임			0
	위원회 운영		О	
7 가죠 히이	가맹단체장 회의		О	
7.각종 회의	사무국장 회의		О	
	기구개편 및 정원조정			О
8.인사 관계	직원의 채용 및 면직			O
	특별승진 및 특별승급			0
	직원의 정기승급, 전보 및 상벌		О	
	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		O	
9.직원 복무	사무국장 및 임원의 출장 , ,			0
	'		0	
			0	
	직원의 근무평정 직원의 교육 및 연수		0	
	작현의 교육 및 연구 팀장 미만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		0	
	(근태, 출장, 초과근무 등)	0		
10.직원 복리후생	직원의 4대보험 관련 업무	0		
	건강진단 등 복리후생 업무	О		
	재해보상관리 업무		О	
11.예산의 집행	건당 오천만원 이상금액			0
	건당 오천만원 미만금액		О	
	방침이 결정된 보조금		0	
	인건비,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		О	

	ol II Ji o	전결권자		~11
	업무내용	팀장	국 장	회장
12.자금운영 및 관리	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		O	
	지출 원인행위		0	
	수입, 지출결의		0	
	특별기금 관리운영		0	
	세입, 세출 외 현금관리 세입, 세출 월계표 및 잔고확인	0		
		0		
	예산의 전도 및 정산보고		О	
13.유관기관 협조	정책사항			0
	중요사항		О	
	일반사항	О	_	
	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		0	
	사무의 인수, 인계		0	
	중요문서 공람 처리		O	
	기타 각종 문서 처리	О		
14.일반 업무	감사결과 처리		O	
	통신 및 전산장비 운영	0		
	비품 및 소모품 관리	О		
	인장 관리	О		
	제 증명 발급		0	
	진정 및 민원 처리		О	
15.민원 및 분쟁소송	제소, 피소, 판결사항		О	
	소송진행 및 소명에 관한 사항		О	
16.국제체육행사 및 교류			О	
17.생활체육진흥	기본사업계획 수립		0	
	계획의 시행		0	
18.체육대회 운영	개최계획 수립		0	
	대회운영 및 결과보고		О	
	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		0	
	임원, 사무국장 인준		О	
19.가맹단체지도	육성 및 지원계획		О	
	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및 확인		О	
	장애체육인의 포상 및 징계		О	
	가맹단체 내부분쟁 조정		О	
20.가맹단체 지원	개최 및 참가 지원계획 수립		О	
	대회운영비 지원 및 결과보고		О	